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	
번호	

2004. 7. 6

1. 제안사유

- 시 기구를 개편하여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확정(2004. 6. 30)됨에 따라
-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이며,
-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원의 지위 향상 도모

2. 주요골자

- “행정국”을 “행정기획국”으로 한다(안제3조제2항제2호)
- 재정경제국, “보건환경국중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”, 직속기관 중 성남시 농업기술센터, 사업소중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,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(제3조제2항제3호)
- 문화복지국, “보건환경국중 보건위생과”, 직속기관 중 성남시수정보건소, 성남시중원보건소, 성남시분당보건소, 사업소 중 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(제3조제2항제4호)
- 위원회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(안제3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)

3. 검토의견

- 시 기구 개편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
- 제11조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으로
-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의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